

# 제8차 사규심의위원회 수정입안내역

## □ 인사규정시행내규

현행							수정입안							비고			
〈별표 11의2(제61조 관련)〉								〈별표 11의2(제61조 관련)〉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구분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파면	해임 이상	강등 이상	정직 이상			감봉 이상
2.공금 관리 및 금품수수	2. 공품·향응수수 등 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으로 금품중개 행위 마.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0	0	0	0	0	0	2.공금 관리 및 금품수수	2. 공품·향응수수 등 가. <b>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 수수</b>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으로 금품중개 행위 마.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 조건으로 금품중개 행위	0	0	0	0	0	0	가. 다.항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별표11-4 청렴업무 위반 처리기준에 의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문구삭제 -직무상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대비 주요추진과제 ( 행정감사팀 -1455호, 2015. 5.20.)관련